

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8-4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8. 9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별 현행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,
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(안 제1조 ~ 제2조)
- 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(안 제3조, 안 별표 1)
- 수련시설의 사업(안 제4조)
- 수련시설의 운영 및 운영비 지원(안 제5조 ~ 제6조)
- 수련시설 이용시간 및 휴관일(안 제7조, 안 별표 2)
- 수련시설 사용신청 및 이용의 제한(안 제8조 ~ 제9조)
- 수련시설 사용료 징수 및 반환(안 제10조 ~ 제11조, 안 별표 3)

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2

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0조, 제11조, 제16조, 제24조
- 「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및 「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8. 8. 30. ~ 9. 9.(10일)

기타 참고사항

- 방침결정문 : 붙임3
- 안산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자료 : 붙임4

〈 불임 1 〉

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 이란 「청소년기본법」(이하 이 조에서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
2. “청소년수련시설”(이하 “수련시설”)이란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설치·운영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3. “청소년단체”란 법 제3조의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4. “청소년활동”이란 법 제3조의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, 교류활동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.
5. “시설사용료(이하 “사용료”라 한다)”란 제2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(명칭 및 위치) 시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

제4조(사업) 수련시설이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, 운영 및 지원
2. 청소년 교육, 상담, 그 밖의 청소년복지 증진 사업
3.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문화 활동 및 생활체육 활동 사업
4.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시설의 운영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수련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가 출연한

기관 또는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청소년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게 수련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「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등 관계법령을 따르되, 위 관계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6조(운영비 지원) 시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이용 및 휴관) 수련시설별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. 다만, 수련시설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(사용신청 등)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에게 신청하여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고, 신청 수리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수리한다.

③ 시설장은 수련시설 내 모든 시설을 청소년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9조(이용의 제한 등) 시설장은 수련시설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.

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
2.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3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신청수리 조건을 위반한 때
4.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
5.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6.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

제10조(사용료 등의 징수) ① 수련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. 다만, 수련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.

②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4. 「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5. 「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

제11조(사용료 등의 반환) ①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.

1.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
 2.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
 3. 시설 이용 신청자가 이용 개시 1일 전까지 신청수리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
- ② 이용자의 귀책 발생 시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등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.
1. 이용개시 후 이용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
 - 가. 이용기간의 1/3 경과 전 : 사용료의 2/3 해당액 환급
 - 나. 이용기간의 1/2 경과 전 : 사용료의 1/2 해당액 환급
 2. 이용개시 후 이용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 :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해 월의 반환 대상 사용료 등(사용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 등을 말함)과 나머지 월의 사용료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제12조 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「청소년기본법」,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·위탁·운영 중인 시
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·위탁·운영 중인 시설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및 「안산시
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

소관 실·과		교육청소년과
입	실·과장 직위·성명	교육청소년과장 박 양 복
안	계장·팀장 직위·성명	청소년팀장 박 순 덕
자	담당자 성명·전화	홍 인 표 (행정 2218)

[별표 1]

청소년수련시설 명칭 및 위치 (제3조 관련)

명 칭	위 치	비 고
상록청소년수련관	안산시 상록구 삼일로 696(성포동)	
단원청소년수련관	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(초지동)	
일동청소년문화의집	안산시 상록구 호동로 89-16(일동)	
사동청소년문화의집	안산시 상록구 선진로 112(사동)	
안산청소년문화의집	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(선부동)	
선부청소년문화의집	안산시 단원구 우목골길 7-15(선부동)	

[별표 2]

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및 휴관 (제7조 관련)

수련시설의 명 칭	시 기	이 용 시 간		휴 관 일	비 고
		평 일	토·일요일		
상록청소년수련관	연중	09:00 ~ 22:00	09:00 ~ 18:00	매주 월요일 및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하는 공휴일	
단원청소년수련관					
일동청소년문화의집					
사동청소년문화의집					
안산청소년문화의집					
선부청소년문화의집					

* 이용시간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이 편리한 시간으로 변동할 수 있다.

[별표 3]

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(제10조제1항 관련)

1. 청소년수련관

(단위 : 원)

구 분	기 준	사 용 료	
		아동· 청소년	일 반
다목적실	자유이용	2시간	무 료 10,000
강의실	자유이용	2시간	무 료 10,000
댄스연습실	자유이용	2시간	무 료 10,000
음악연습실	자유이용	2시간	무 료 10,000
체육관 체육관 체육관 체육관 체육관 체육관 체육관	대관	체육관 자유이용	1인/2시간 무 료 2,000
		평일	2시간 20,000 40,000
		토·공휴일	2시간 20,000 45,000
	부 대 시 설	그랜드피아노	1회 10,000 20,000
		무선마이크	2개 6,000
		유선마이크	2개 무 료
		빔프로젝트	1대 10,000
		냉난방	시간당 20,000
풋살장	대관	평일	무료 20,000
		토·공휴일	무료 20,000
테니스장		평일	1인/2시간 무료 3,000
		토·공휴일	1인/2시간 무료 4,000
안산대덕 청소년과학관	천체영상관람	1인/1회	1,000 2,000
비 고		○ 추가요금 - 다목적실, 강의실, 댄스연습실, 음악연습실은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5,000원 - 소극장·체육관·대관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· 평일 : 15,000원 / 토·공휴일 : 20,000원 - 풋살장 대관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: 5,000원 - 부대시설 : 무선마이크(1개 추가시 3,000원) 유선마이크(1개 추가시 2,000원) ※ 시설 대관인 경우 아동·청소년은 추가요금의 50% 적용함.	

2. 청소년문화의집

(단위 : 원)

구 분	기 준	사 용 료	
		아동 청소년	일 반
강 당 (다목적실)	2시간	3,000	10,000
비 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추가요금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5,000원※ 아동·청소년은 추가요금의 50% 적용함.		

3. 수강료

- 프로그램별 특성을 감안하여 수련시설의 장이 수강료를 결정한다.
※ 교재비, 식비, 교통비, 숙박비, 타 시설 이용료 등 실비는 별도로 한다.

안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8-46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8. 10. 25.
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수정이유

- 청소년 수련시설 대관절차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부칙을 수정함.

주요골자

-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.(안 제8조)
- 부칙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.(부칙 안 제3조)

안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사용신청 등)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에게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, 신청 수리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은 방문·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 등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, 시설장은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시설장은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수리한다.

④ 시설장은 수련시설 내 모든 시설을 청소년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의안번호 제8-46호 안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및 운영 조례안 부칙 제3조 중
“이를 폐지한다.”를 “2019년 1월 1일자로 폐지한다.”로 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정안
<p>제8조(사용신청 등)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에게 신청하여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고, 신청 수리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②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수리한다.</p> <p>③ 시설장은 수련시설 내 모든 시설을 청소년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사용신청 등)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에게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, 신청 수리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은 방문·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 등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, 시설장은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시설장은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수리한다.</p> <p>④ 시설장은 수련시설 내 모든 시설을 청소년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
부 칙	부 칙
<p>제1조(시행일) (생략) 제2조(경과조치) (생략) 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및 「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</p>	<p>제1조(시행일) (원안과 같음) 제2조(경과조치) (원안과 같음) 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)----- ----- 2019년 1월 1일자로 폐지한다.</p>